

# 참여정부의 산업보건정책방향

송 봉 근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 목 차

## I. 산업재해 발생추이

1. 연도별 발생 현황
2. 전년대비('01)업무상 질병 현황
3. 최근 산업재해의 특징

## II. 산업보건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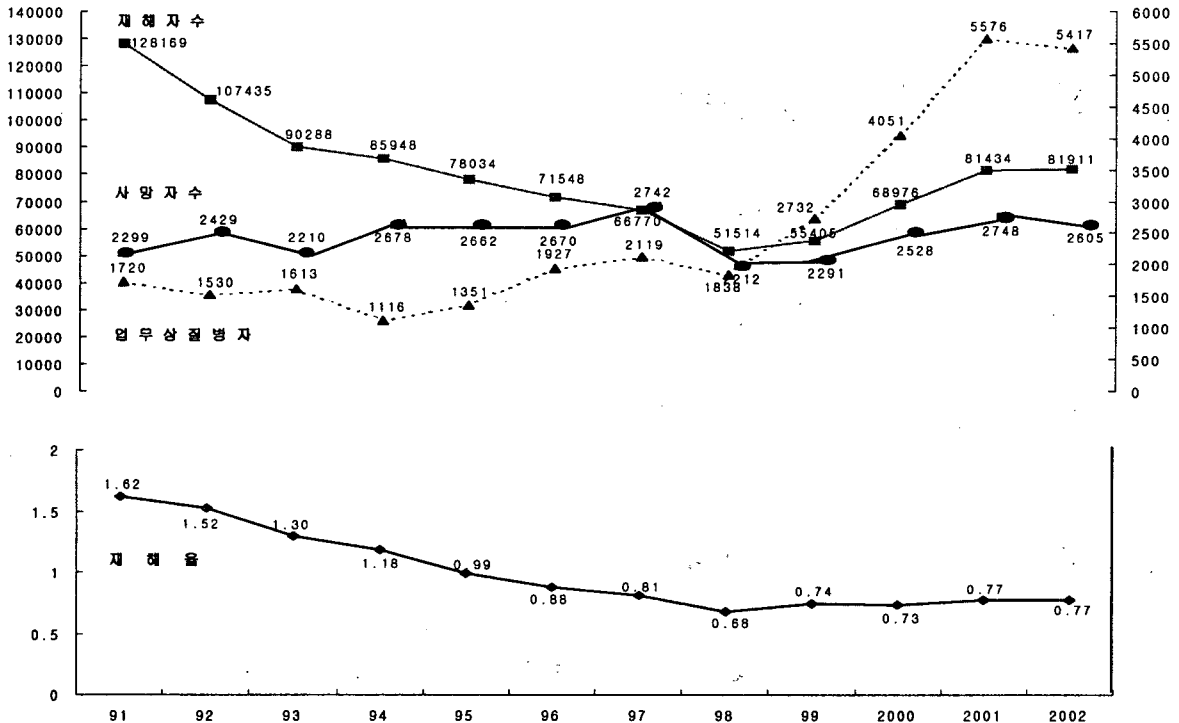
1.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인프라 미비
2.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체계 미흡
3.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미흡

## III. 산업보건사업 정책방향

1. 사업장 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2.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
4. 산업전문간호사 제도 도입

# I. 산업재해 발생추이

## 1. 연도별 발생 현황



○ 그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재해율이 '98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

- 이러한 증가는 안전보건 규제완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과
- 근골격계 등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확대, 5인미만 사업장 법적용 확대('00.7월) 등 때문으로 분석

○ 증가하던 재해율이 '02년에는 전년 수준 유지(0.77%)

※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0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천억원 증가(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조7천억원의 약 6배에 달함)

## 2. 전년대비('01년) 업무상질병 현황

- 업무상질병자수는 5,417명으로 전년대비 236명(4.2%) 감소
- 소음성난청, 중금속 중독 등에 의한 직업병자는 1,351명으로 전년대비 191명(12.4%) 감소
- 작업관련성 질병자수는 4,066명으로 전년대비 45명(1.1%) 감소
  - 뇌·심혈관질환자는 2,056명으로 175명(7.8%) 감소
  - 근골격계질환자는 1,827명으로 193명(11.8%) 증가

### < 업무상질병자 현황 >

구분	총계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기타	소계	뇌·심질 환	신체부담작업	요통	기타	
2002	계	5,417	1,351	915	219	8	48	32	129	4,066	2,056	1,167	660	183
	요양자	4,190	944	529	219	6	45	26	119	3,246	1,296	1,167	660	123
	사망자	1,227	407	386	0	2	3	6	10	820	760	0	0	60
2001	계	5,653	1,542	949	289	25	45	32	202	4,111	2,231	768	866	246
	요양자	4,456	1,127	566	289	23	38	27	184	3,329	1,528	768	866	167
	사망자	1,197	415	383	0	2	7	5	18	782	703	0	0	79
증감 (증감률)	계	-236 (-4.2)	-191 (-12.4)	-34 (-3.6)	-70 (-24.2)	-17 (-68.0)	3 (6.7)	0 (0.0)	-73 (-36.1)	-45 (-1.1)	-175 (-7.8)	399 (52.0)	-206 (-23.8)	-63 (-25.6)
	요양자	-266 (-6.0)	-183 (-16.2)	-37 (-6.5)	-70 (-24.2)	-17 (-73.9)	7 (18.4)	-1 (-3.7)	-65 (-35.3)	-83 (-2.5)	-232 (-15.2)	399 (52.0)	-206 (-23.8)	-44 (-26.3)
	사망자	30 (2.5)	-8 (-1.9)	3 (0.8)	0 (0.0)	0 (0.0)	-4 (-57.1)	1 (20.0)	-8 (-44.4)	38 (4.9)	57 (8.1)	0 (0.0)	0 (0.0)	-19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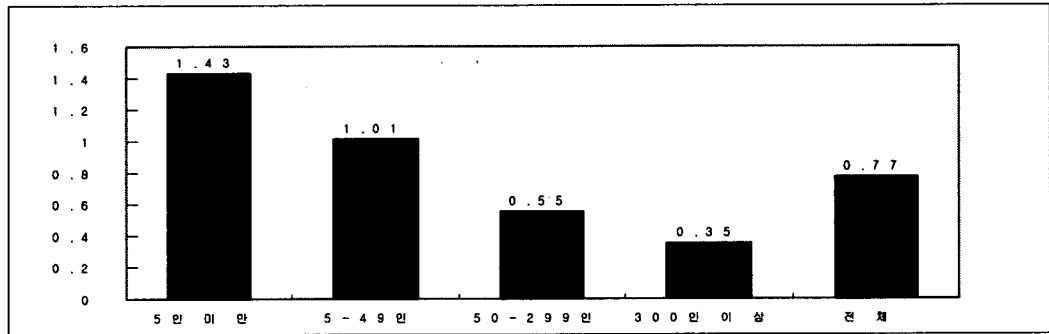
※ 직업병의 기타 : 물리적 인자, 이상기압, 진동장해, 세균바이러스 등

※ 작업관련성 질병의 기타 : 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등으로 인한 질환

### 3. 최근 산업재해의 특징

-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은 재해율을 나타냄
  - 50인 미만, 특히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

(’02년말 현재)



- 재해유형별로는 업무상 질병자가 급격한 증가 추세
  - 기존 직업병은 감소추세이나, 노동강도 강화,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급증

※ 업무상질병자수 : '98년 1,288명 → '02년 5,417명  
 (직업병 : 1,334명, 근골격계질환 : 1,827명, 뇌심혈관질환 : 2,056명)

-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의 재해 증가
  - 최근 건설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재해에 취약한 신규 근로자, 고령자 등이 대량 유입되어 건설재해 증가

※ '02년 건설재해자수는 19,925명으로 전년대비 18.8%(3,154명) 증가

- 재해율은 광업(7.32%)이 가장 높고, 제조업(1.22%), 농림어업(0.96%)이 그 다음을 차지

※ 광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폐는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발병하기 때문에 당분간 증가추세 지속 전망

## II. 산업보건의 문제점

### 1.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인프라 미비

- 작업관련성질환에 대한 노사정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율적 사업장 예방활동으로는 한계,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
  - 한편, 예방활동을 유인할 관련 법규정, 인간공학 등 예방 전문인력 및 육성체계, 관련 조사연구 등 인프라 미비

### 2.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체계 미흡

- 산안법상 화학물질 관련 체계의 연계성 부족, 화학물질 유해성의 정기적 검토 부재 등 비체계적 관리
  - 한편, 산안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에서 정한 일부 유해인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건관리 기준 미설정
    - ※ 생물학적인자, 방사선, 진동 등

###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에 대한 문제제기

- 측정대상 중 노출기준이 미설정된 물질이 있거나, 미량·일시적 사용물질도 정기적 측정의무를 부여하는 등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평가방법의 비합리성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종합적인 평가체계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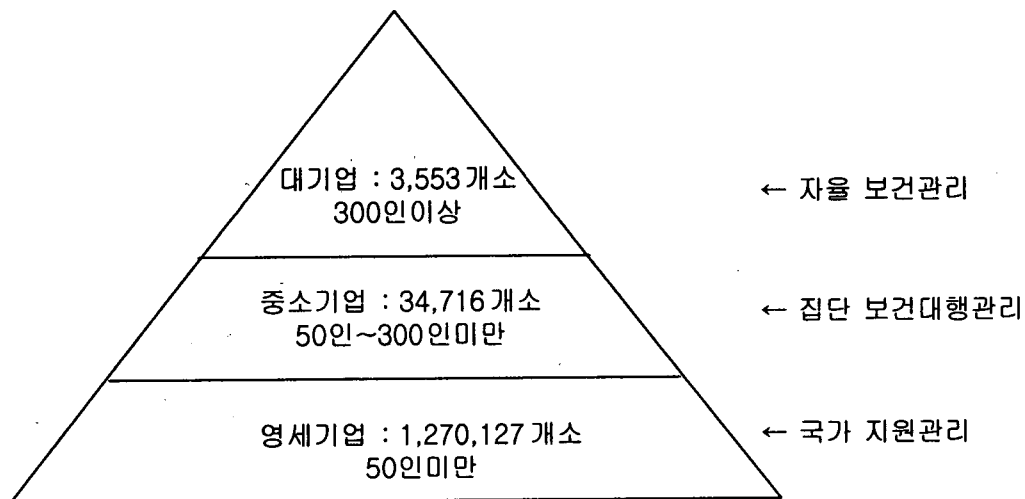
### 3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미흡

- 특수건강진단을 통한 직업성 암 등의 조기 발견을 저조, 작업관련성질환 실시대상에서 제외 등 특수건강진단 실효성 의심
- 지역특성을 미반영, 진단기준의 상이, 민간기관의 참여 부족, 중앙감시기능의 결여 등 직업성질환 감시체계의 문제점 제기
- 역학조사 수행인력 부족으로 조사결과 보고지연 등의 문제

※ 25명(공단 직업병연구센터, 창원역학조사팀)이 타업무와 병행 수행

## Ⅲ. 산업보건사업 정책방향

### 1.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지원체제 구축





- 대기기업은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율보건관리체제 구축 유도
  - 산업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신기술·기법 도입
  - 최신 보건관리기법 보급 및 우수사례 전파, 워크샵 개최
  - 법 위반시 필요에 따라 보건관리자 증·개입 명령 등 적극 활용
  
- 중소기업은 대행관리의 효과성 제고
  - 재해율 감소기관 우대(인센티브 부여, 포상 등)
  - 업무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시 제재근거 마련('03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 영세기업은 국고지원 관리
  - 보건관리 취약사업장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 조성지원 대상을 재해다발 및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등으로 조정(지원금액 축소 4,500만원 → 2,000만원)
  - 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은 재해발생 및 근골격계질환 취약사업장 중점지원

## 2.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확립

#### ○ 유해위험성 평가 및 분류의 합리화

- 특정화학물질,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 분류기준의 체계적 정비 및 노출기준 주기적 제·개정
- 근로자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선정,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 ○ 화학물질 제조·사용 사업장 관리 강화

- 신규화학물질 양도·제공시 유해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통보서를 사용사업주에 교부 의무화('03.7월 시행)
- 신규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용실태 점검으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 화학물질 사용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정보카드(CIC) 개발·보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점검

※ 화학물질정보카드 :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해성 등 특히 유의할 사항을 한 장의 카드로 개발·제공

### □ 작업환경취약 사업장 차등관리

####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 감독관 책임관리 및 청별 「책임관리점검팀」을 통한 점검

- 석면, 벤젠 등 직업병 다발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
  - 공단을 통해 유해인자별 중점관리 및 공학적 기술 지원
- 직업병요관찰자 다수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불시점검 및 현장측정을 통한 작업환경 모니터링 실시

## □ 작업환경측정 실시 내실화

- 작업환경측정대상 확대 및 방법 개선
  - 독성 및 사용량 등을 감안, 측정대상 유해인자 확대 (116종→191종)
  - 측정대상물질 신규취급 또는 작업공정변경시 작업환경측정 의무화(1개월 이내)
  - 노출정도에 따라 측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노출기준 초과 : 측정주기단축, 노출기준 미만 및 직업병 미발생 : 주기 완화)
- 작업환경측정의 질 관리 시스템 강화
  - 측정기관 정도관리 강화(평가대상물질 확대 등)
    - ※ 정도관리 : 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평가수단(측정기관 114개소)
  - 측정기관의 측정능력을 종합평가 및 결과 공표 법적 근거 마련(법개정)

### 3.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

#### □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강화

##### ○ 근골격계질환예방 기반 조성

- 법적 예방의무 도입('03.7월)에 따라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 사업주 조치사항 마련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근골격계 질환자 다수발생 사업장을 특별관리, 집중관리로 차별화하여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
-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
  - ※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근골격계질환의 41.5%가 발생

##### ○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 및 건강증진운동 전개

- 뇌·심혈관질환 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초질환 다수 발생사업장 기술지원
- 건강증진운동 참여사업장 기술지원, 체력측정장비 대여 등 기업의 자율적 건강증진운동 지원

#### □ 직업병 조기발견체제 구축

##### ○ 역학조사 대상 확대

- ※ 현행 화학물질 → 물리적·생물학적 인자 추가

##### ○ 민간기관과 연계한 지역별·질병별 조기감시체제 구축·운영

- ※ 지역별로는 경인, 구미, 경남·울산지역
- ※ 질병별로는 근골격계질환 및 악성 종피종(석면)

## □ 근로자 건강진단 내실화

- 신종 질환에 대응, 건강진단제도의 합리적 개선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 : 현행 120종→255종
  - 수시건강진단 대상 추가 : 근골격계질환과 일반부서 근로자의 직업성 천식
  - 근로자의 검진기관 선택권 보장
- 건강진단기관 관리 강화
  - 지정시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 보장
    - ※ 인정의(산업의학 교육·훈련을 이수한 의사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자격 부여) 제도 도입 및 필수 시설장비 추가
  - 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제한
  - 지정취소기준 신설 등 행정처분의 구체화
    - ※ 취소기준 : 허위판정, 검진거부·중단, 비용기준 미준수 등

## □ 건설업 「사업장주치의」 제도 활용

-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에 산업의학전문의, 예방의학전문의, 가정의학전문의, 건강진단·보건관리대행·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의사를 주치의로 활용 계획

## ○ 역할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한 조언
-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고혈압 등 기초 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도등

## ○ 위촉 및 추진방법

- 건설현장소장 등이 「사업장주치의」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시 주치의의 역할, 방문횟수, 방문시간 등을 정하고 연간 근로자 건강관리 계획을 협의하고 주치의 위촉수당을 설정

※ 수수료지급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02. 7. 22) 【별표2】 제6호(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또한, 산업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건설업 특성에 맞는 「사업장주치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배제되고, 한시적·유동적인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보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순회건강지도, 응급의료, 방문진료 등의 내용 포함)

## □ 보건관리자 직무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 직무중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개정중(입법 개정안 제출)
  - 또한, '03년도에 인간공학기사·기술사의 자격 신설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인간공학기사·기술사를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포함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인력의 인프라를 구축

## 4. 산업전문간호사 제도 도입

- 사업장에 배치된 산업간호사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습득을 위하여 산업전문간호사 제도 신설 요청('98년 2월 보건복지부에 요청)
  - '03년 5월 현재 관계법령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 '03년 하반기에 공표예정
    - ※ 산업전문간호사가 배출되면 산업재해자 및 직업병관리, 근로자 건강증진사업등 양질의 산업보건서비스 제공